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0. 3.

제 출 자 : 평창군수

1. 개정 이유

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부서간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 관련 업무 : 문화체육과 ⇒ 주민생활지원실

나. 레저·스포츠 관련 업무 : 관광경제과 ⇒ 문화체육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별첨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 예고 : 2009.12.18 ~ 2010.01.07(20일간), 의견제출 없음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제2호, 제6호,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주민생활지원실

- 가. 보건·복지·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관광·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
- 나.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·조정에 관한 업무
- 다. 지역자원의 발굴·동원·연계·관리 및 제공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
- 라.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
- 마.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,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
- 바.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
- 사. 여성·아동·보육·모부자가정 출산장려에 관한 업무
- 아. 주민불편 생활민원 관련 업무
- 자. 청소년 관련 업무

6. 문화체육과

- 가.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
- 나. 향토문화발굴 및 문화재 보호 관련 업무
- 다. 도서관 관련 업무
- 라.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
- 마.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
- 바. 레저·스포츠 관련 업무

7. 관광경제과

- 가. 관광 기획 및 홍보·행사 등에 관한 업무
- 나.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 인·허가 관련 업무
- 다.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
- 라. 에너지 관련 업무
- 마. 기업지원 및 지원에 관한 업무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② (생략)</p> <p>2. 주민생활지원실</p> <p>가. ~ 아. (생략)</p> <p>6. 문화체육과</p> <p>가. ~ 마 (생략)</p> <p><u>바. 청소년 관련 업무</u></p> <p>7. 관광경제과</p> <p>가. ~ 마. (생략)</p> <p><u>바. 레포츠 관련 업무</u></p>	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주민생활지원실</p> <p>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자. 청소년 관련 업무</u></p> <p>6. 문화체육과</p> <p>가. ~ 마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바. 레저·스포츠 관련 업무</u></p> <p>7. 관광경제과</p> <p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바. <삭 제></u></p>

관계법령 발취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